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09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청구]

전 문

원고1. A

2. B

피고C

변론 종결2018. 5. 2.

판결 선고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6. 2. 접수 제3753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0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6. 2. 접수 제3753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2. 7. 6. 접수 제44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7. 10. 26.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6366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2)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였다.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3머1797호로 조정예 회부되었다. 조정 진행 중 "D은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D은 2012. 7. 6. 남편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에게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15. 4. 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1) 피고는 D이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7502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1)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653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D과 원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2. 피고의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2016. 12. 11.자 약정

피고는 2016. 12. 11.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판결을 비롯하여 피고의 D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다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D와 원고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 경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2017. 6. 2.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3753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37533호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D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승소

D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의 D에 대한 가.항 기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8094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6.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11.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2017. 6. 2. 당시 D을 대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D을 대위할 피보전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는 대위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민영

별지